對 外 秘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대한민국법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6. 3.

법 원 행 정 처

〈 요 약 〉

1. 검토 배경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 **2000년 이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

- 회원 431명으로 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로 큰 규모 ⇨ 곧 도산법을 제치고 2위 등극 유력
- 2011. 8. 설립 이래 가장 압도적인 회원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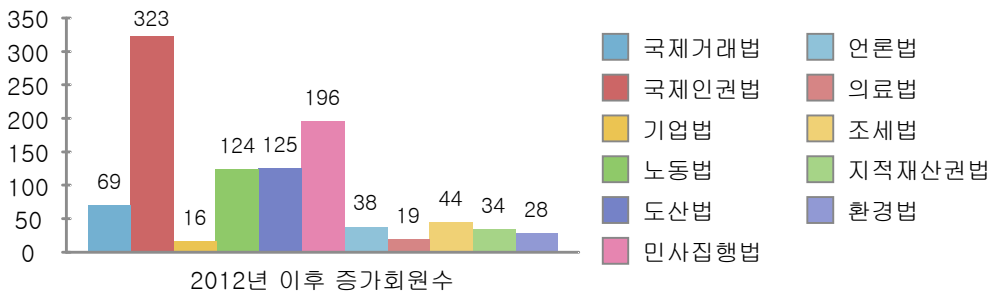

- 2016년 들어 2개월 여 만에 40개가 넘는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 다른 커뮤니티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최대규모 민사집행법도 토론장 및 QnA 게시글이 1년간 7건 정도인 것과 대비)
- 법관 전세대의 가입 및 활동 활발 ⇨ 사무분담과 무관한 가입이라는 점에서 젊은 법관들 참여 높고, 다른 연구회의 노령화와도 대비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선점 등 포함**

▣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전문분야연구회 본질을 벗어난 활동

다. 종합대책 마련 필요 ⇨ 1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이라는 큰 틀의 대책 + 2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위험방지 정무적 대책 필요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 연혁 개관 ⇨ 2006년 예규개정 이후 사실상 방치**

▣ **예산 현황 ⇨ 최근 7년 이상 1억원 수준 동결**

▣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 : 2012. 기조실의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 ⇨ 시행되지 아니함**

- 설립허가규정 폐지, 운영 관련 규정 전면 삭제, 상시 예산 지원 등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 최근 수년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가파른 성장, 두 번째는 젠더법연구회 (2015년에는 노동법연구회도 회원 수 급증)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

- 1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 난민 등 국제적 이슈가 아니라 일반적 인권 관련 전반을 다룸 ⇨ **'인권'의 흡입력 극대화**
- 2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 창립 멤버(우리법연구회 출신 다수, 정황상 설립 배경 의문)들이 여전히 활동 주도
- 3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 고등부장과 평판사가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는 등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 +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으로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성격
- 4 **사조직적 특성 유지** ⇨ 선배의 찬조금 출연 당연시되는 등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 반영)
- 5 기타 ⇨ 지역별 친목모임, 운영위원 및 팀장제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이 그대로 이식된 것임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1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언론법·기업법 등 회원수 감소 내지 정체, 참여 저조 ⇨ 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할 새로운 전문분야 발굴 긴요

▣ **2 중복가입 금지규정 形骸化**

- 공정한 예산지원 등 필요성에 의하여 정하여진 원칙임에도 사실상 커뮤니티 시삽 등에 의해 제한 없이 중복가입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회원수도 단연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율도 가장 높음(53%)** ⇨ 핵심그룹의 적극적 포섭활동

▣ **3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현행배정방식] 예산의 50%만 활동성과 순위에 따라 배정
- [한계①] 1억원 예산을 15개 연구회에 배분하는 결과 최대지원 1천만원, 최소지원 450만원으로 연구회 활동의 인센티브로서 효과 미흡
- [한계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 관리범위 이탈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처의 실질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

▣ **4 커뮤니티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사법부 전체]** 비회원의 접근성 차단 + 지식광장에는 미게시
- [연구회 회원]도 비적극회원의 열독률 저조 ⇨ 재판실무 활용 등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 미흡

▣ **5 학계·재야·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 및 법원 신뢰강화 기능 미미**

- 사법부 전문성 외부 각인 효과 부족, 법원 우호세력 확보 성과 미미, 성과물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지도 아니함

▣ **※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 1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 논의영역도 이탈, 정치적 함의 포함 주제 및 연사 다수
- 2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조직적 개입 시도 ⇨ 핵심세력이 2015. 7. 발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통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조직적 관여 시도
- 3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

4.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

가. 개선방안 요약 ⇨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 및 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나.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

▣ **(법관 사회 관심 소진 ⇨) 1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필요성]** 특정 연구회의 이슈 독점 방지, 자기개발 욕구 해소 및 합리적 여론형성의 장 마련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인사제도 및 법원문화 관련 여론 주도)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 마련 필요
- **[기본방향]** 젊은 법관들의 관심·수요·참여 고려, '주제' 못지않게 '주체'의 상징성 중요함 ⇨ 젊은 법관들의 롤모델 전진 배치
-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① 외국어·해외사법·국외연수에 관심 있는 법관 다수, ② '국제' 관련 이슈 포괄적으로 망라·포섭·유인 가능, ③ 우호적 분위기 형성시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지지연론 출발점 역할 기대
  - [운영진 후보군] ① 이○○ 고법판사, ② 원○○ 지법부장 등

● **[후보 2] 가칭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 관련 쟁점 전반
- ① 젊은 법관의 관심, ②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 바로잡는다는 명분이 공감대 형성, ③ 영화 및 방송 관련 이벤트로 관심 흡인력 극대화하여 단기간에 연구회 판도에 변화 유도 가능 등
- 세련된 명분 제시 중요
- [운영진 후보군] ① 문○○ 지법부장, ② 전○○ 고법판사 등

▣ **(중복가입 금지규정 형해화 ⇨) 2 중복가입자 정리**

● **[필요성]** 원칙을 준수하는 법관만 여러 손해를 보고 있고, 편법적 중복가입을 혜택을 인권법연구회가 최대 향유하고 있음

● ① 법관들 상대 중복자 정리 명분 있고, ②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하며, ③ 인사모 해소를 위해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이며, ④ 사전 준비의 부담이 없는 등의 여러 장점 있음

● 시행하면 국제인권법(431⇨204), 노동법(295⇨196) 등이 가장 위축됨

● 중복정리과정에서 인권법으로 편중되는 부작용 막기 위해 부장급 탈퇴 등 다른 방안과 동시에 실시 필요

▣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3 예산 증액 및 실질 평가 시스템 구축**

● 예산동결 기간의 회원 및 성과 급증, 다른 부처 현황 등을 내세워 예산 당국 설득 ⇨ 증액에 따른 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 확대로 연구성과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 가능

● 평가기준 구체화·실질화하고 각급 법원 전문분야 지원비(6억원)도 활용

▣ **(커뮤니티 폐쇄성 ⇨) 4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자신들만의 동질감', '이너써클 활동의 은밀한 만족감' 등 유발 ⇨ 학술성과 공유 마땅, 사법부 전체 역량 축적에 기여 필요

● ① 다른 전문분야 성과 접근성 강화, ②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물 사법부 전체 공유 등의 명분과 ③ 각종 성과 지식광장 게재 독려 등 오해 해소 방안 동시 활용

● ①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 활성화, ② 중복가입금지 엄격 시행에 따른 불만 해소, ③ 은밀한 논의의 만족감 내지 결속감 약화로 인적 유대 수단이 아닌 학술연구 수단으로 정립, ④ 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로 chilling 이펙트 등 다양한 기대효과

▣ **(외부 활동 미흡 ⇨) 5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축적된 역량 활용, 매너리즘 탈피, 사법부 영향력 및 위상 강화 등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및 출판사업 발굴 및 지원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등
- ⇨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추가 검토 필요

다. 특정 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

▣ **(주제의 보편타당성 ⇨) 1 허가받은 전문분야 범위로 제한**

- 허가받은 '국제인권'으로 한정 ⇨ 단 학문의 자유 억압 등 오해 방지
- [해결방안 ①] 회장의 리더십 발휘
  - 전문분야연구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모 등에 대한 문제제기
  - 차기 회장은 핵심세력이 나설 것이므로, 현 회장 체제에서 인사모 해결필요
- [해결방안 ②]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
  - 보편적 인권 관심 국제인권법으로의 독점적 유입 방지하고 수요 흡수
  - 헌법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 관련 대형 이벤트 발굴·지원

▣ **(핵심그룹의 확장 시도,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등 ⇨) 2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 방안**

- 인위적 개입은 성공 불가하므로, 자연스러운 문제제기 및 논란 유도
  - ① 인사모 문제, ② 신망 높은 고법부장들 다수 집단 탈퇴(명분 및 시기 조율), ③ 우리법연구회 관련성 등 막연한 논란 및 문제제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임

▣ **(지역별 모임 등 친목모임 활성화 ⇨) 3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

▣ **4 관심 및 활동 저조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5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 ⇨ 자율적 연구활동에 대한 탄압 논란, 행정처가 논란의 정면에 서게 되는 부담 등에 비추어 소극**

▣ **인사모 관련 로드맵 예시 (사법행정위 개회 시기 중 시행 여부 문제됨)**

4월 초	전정국장 명의 공지 '①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 법관들 피해 명분) 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
4월 중순	국제인권법 회장, 회원들 상대 인사모 관련 문제제기
4월 하순	사법국제화연구회 및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로 연구회 신설 다른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
5월 초순	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 ⇨ 고법부장 등 대거 탈퇴

5월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

對 外 秘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검토

2018. 6. 5. 법원행정처

1. 검토 배경

가.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점검 필요

▣ **2000. 7.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후 15년 이상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

- 2000년 당시 법관들의 관심도, 성과 활용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설된 후 큰 변화 없이 유지 ⇨ 특히 2006년 예규개정 이후로 사실상 방치
- 현행 체제는 법관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함

- 2016년 현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면, **상당수 커뮤니티의 연구분야 및 시스템은 2,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것에 불과함

▣ **연구분야 주제는 물론 연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 필요**

- 변화하는 시대 환경 및 젊은 법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분야를 담당할 연구회 신설 및 지원 필요
- **휴면상태 연구회 폐쇄 여부, 중복가입 연구회 정리 여부 등 연구회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도 재점검과 개선** 필요

나. 특정 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및 활동 현황**

- 2016. 3. 기준 431명으로 (중복가입 허용되는 연구회를 제외한) 전체 11개 연구회 중 3번째로 큰 규모 ⇨ 곧 도산법을 제치고 2위 등극 유력

연구회	민사집행법	도산법	국제인권법	중복가입 연구회 중에서는 형사법(2,041명), 젠더법(691명)이 대규모임
회원수	875명 (법관은 635명)	449명	431명	

● 2011. 8. 설립 이래 가장 현저한 회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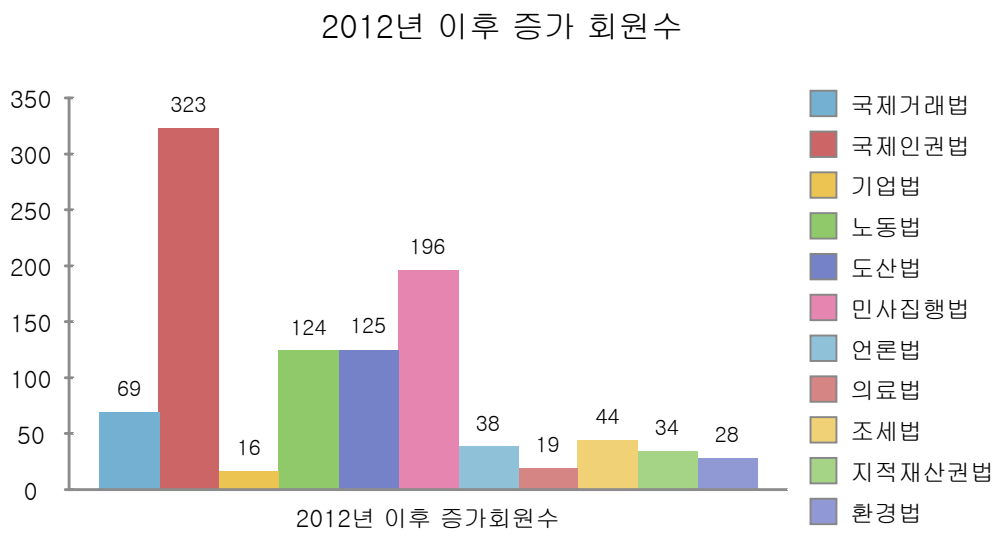

● 2016. 1. 1.이후 현재까지 **2개월 여만에 커뮤니티에 40여개의 본글과 수백개의 댓글** 달림 ⇨ **다른 커뮤니티의 전반적 침체 추세와 대비**됨

- **최대규모 전문분야연구회인 민사집행법 연구회의 커뮤니티 활동 감소 추세**

년도	토론장 게시글 수	QnA 게시글 수
2010년	17개	46개
2015년	1개	6개

● **법관 전세대에 걸쳐 고른 가입 및 활동 활발**

기간	연간 가입법관	20기 이상	21~25기	26~30기	31~35기	36~40기	41기 이하
2014년	82명	5	3	16	30	22	6
2015년	132명	1	12	15	27	60	17

- 가입회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정 기수 구간에 치우치지 않고 법관 전세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음

-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도 배석판사급 경력인 법관들의 가입이 다수이나, 이는 사무분담으로 해당 분야를 맡게 됨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인권법연구회는 재판사무분담과 무관하게 개인적 관심으로 인하여 가입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이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cf) 민사집행법 연구회 오프라인 활동(원외연수) 참여 법관의 노쇠화

년도	참여 법관 수	지법부장 이상 법관 수	법관경력 **하위 10명의 평균 법관경력**
2010년	55명	13명 (23.6%)	1.6년
2015년	48명	17명 **(35.4%)**	3.3년

▣ **외형적 급속·과잉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전문분야연구회 운영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필요**

● '국제인권' 주제의 보편성으로 인한 이슈 先占 및 확장, 편법적 중복 가입 방치 등 운영시스템 자체의 문제점 확인 및 보완책 마련 필요

▣ **나아가,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위험성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이 자신들의 법관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정황 감지됨

● 전문분야연구회의 본질을 벗어난 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통제 방안 및 위험성 해소 방안 긴요한 시점임

다. 종합적 대책 검토 필요

▣ **1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의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의 대응방안은 물론 2 특정 연구회 과잉 성장 관련 위험 방지를 위한 政務的 대응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향후 전문분야 연구활성화 및 대내외 적정 활동 강화를 통해 사법부 전문성 강화, 외부 전문가들의 신뢰 강화, 예산 증액 등 법원에 기여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연혁 및 현황 분석

▣ 연구회 및 관련 규정의 연혁 개관

● 2000. 7. 「전문분야연구회의구성및지원에관한예규」(이하 예규) 제정

● **2000. 8.** 행정처장이 지정한 국제거래법연구회 등 **11개 연구회로 시작**

- 사법정보화 연구회를 제외한 10개 연구회에 대하여는 중복가입 불허

● **2006. 2. 예규 개정으로 연구회 운영상 문제점 대폭 개선**

- 연구회 설립을 '행정처장의 분야 지정'에서 **'법관들의 자유설립'으로 전환**, 단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처장이 설립허가**

- 연구회의 운영성과에 관하여 행정처장 자문하기 위한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 신설**함으로써 예산 배정의 객관성 확보

- **전문재판부 소속 법관의 중복가입 허용** 및 사법보좌관의 준회원 제도 도입

- 연구회별로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게시·열람권을 갖는 **폐쇄 커뮤니티 신설 가능**

● 2006. 11. 헌법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07. 12. 젠더법 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10. 7. 형사법연구회 신설 (중복가입 허용)

● 2010. 12. 예규 개정

- 주요 활동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됨을 고려하여 연구회의 활동성과 및 결산현황 보고시기를 매년 12. 1.에서 1. 15.로 변경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신설 ⇨ 현행 15개 연구회 체제 정립

▣ 예산 현황

● 2016년 예산 편성 ⇨ [210-12 복리후생비] 전문분야 실무연구회 지원비 7억 1천만 원

- 전문분야연구회 지원비로 1억 2백만 원 배정 (나머지 6억 8백만 원은 각급 법원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

- 최근 7년 이상 연구회 지원비 1억 원 선에서 동결 (2012년 무렵까지는 위 지원비가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 약 6억 원과 '사이버연구회 활동지원' 약 1억 원의 2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었던 영향도 있음)

▣ 최근의 개선방안 논의

● 2012. 1. 기조실 '전문분야연구회 운영방식 개선 검토' ⇨ 시행되지는 아니함

☑ [주 요 내 용]

▶ **연구회 활동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행정처장의 **설립허가규정 폐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문분야연구회가 아니어도 전산정보국장의 허가로 개설 가능)
- **운영방식에 관한 일체의 규정 삭제**(회원 자격, 가입 및 탈퇴, 임원진 구성, 총회 및 분과 등 관련 규정)
- **중복가입 금지 규정 삭제**

▶ **예산지원 관련 개선**

- 연 1회 정기예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처장이 특정 연구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직권으로 상시 예산 지원 가능** (당시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의 SNS 사용기준에 관하여, 국제거래법연구회가 FTA에 관하여 각 연구 중 ⇨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주요 연구시 필요성 검토를 거쳐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지원비'에서 상시 지원)
-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예산 배정 폐지 ⇨ 대다수인 중복가입회원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중복가입 전면 허용하면서 인원수 기준 삭제** (단 미중복 순수 회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예산지원 대상으로 함)
-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

▣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수 추이 및 예산 지원 현황

연구회	회장	시샵	회원 수						예산지원현황(평가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년		2015년	
									순위	배정액	순위	배정액
국제거래법	노○○	홍○○	121	121	152	162	206	221	8	550만원	7	550만원
국제인권법	이○○	김○○	11. 8. 설립		108	217	285	431	4	700만원	4	700만원
기업법	김○○	김○○	180	199	198	197	207	214	15	450만원	13	450만원
노동법	김○○	김○○	155	165	171	179	200	295	8	550만원	10	550만원
도산법	이○○	이○○	264	288	324	364	402	449	5	650만원	7	650만원
민사집행법	김○○	이 ○	560	614	679	726	773	875	2	1천만원	1	1천만원
사법정보화	허○○	박○○	300	336	355	362	380	395	8	550만원	12	550만원
언론법	고○○	남○○	88	94	102	118	127	140	12	500만원	14	500만원
의료법	이○○	노○○	236	236	272	283	294	291	12	500만원	15	500만원
젠더법	민○○	김○○	389	397	433	628	651	691	3	950만원	1	950만원
조세법	김○○	이○○	176	186	213	222	238	257	5	650만원	6	650만원
지적재산권법	이○○	이○○	319	319	340	356	358	374	5	650만원	5	650만원
헌법	장○○	김○○	165	184	199	213	220	269	12	500만원	11	500만원
형사법	임○○	이○○	235	519	825	1,294	1,683	2,041	1	1250만원	3	1250만원
환경법	배○○	이○○	182	188	217	224	236	245	8	550만원	9	550만원
회원총수 및 총지원금			2,699	3,139	3,546	4,588	5,545	6,943		1억원		1억원

※ 노란색 음영은 중복 가입 가능 연구회

※ 민사집행법 연구회는 사법보좌관 등의 준회원 포함(법관은 635명)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급증 원인 분석

● 1 전문분야 **주제의 보편·포괄성 및 상징성**

- "국제인권" 이 갖는 **보편타당성 등이 법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옴

- 특히 "국제인권법" 으로 한정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음에도 **일반적 인권 관련 주제 전반을 다루고 있음** ⇨ 난민 등의 국제적 주제에 한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인권" 의 흡입력 극대화**

> ☑ **주제가 갖는 흡입력이 회원 가입으로 이어진 사례**
>
> ▶ 2015. 6.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과 법관' 전문분야 연수 실시
>
> ▶ 법관 72명이 참가, 그 중 19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었으나,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연수에 자발적 참가 ⇨ 3일간의 연수 종료 후 전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 2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활동**

- 2011. 8.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당시 멤버 31명이 여전히 연구회 각종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

> ☑ **국제인권법 설립 배경 관련 분석**
>
> ▶ 2011. 8. 당시 **노동법연구회가 이미 170명에 달하는 법관 회원**을 두고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핵심그룹이 위 **노동법연구회를 더 확장하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국제인권법연구회 개설을 신청
>
> ▶ 이는 핵심그룹이, (학술연구의 호기심이나 필요성이 아니라) 경직된 주제를 다루게 되고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기 쉬운 **노동법 분야 연구회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보편성을 지닌 새로운 연구회 창설을 통해 **활동무대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
>
> ▶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과 무관한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론' 등을 주된 논의 주제로 삼아왔음(2014. 2. 법관론 소모임 개설** 등)

● 3 **회장 경선 등 자유롭고 개성있는 문화**

- 법관으로서 **연구 활동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다른 전문분야 연구회(친목활동은 학술행사 또는 원외연수의 기회에 함께 이루어지는 정도)와 달리 상시적으로 연구와 무관한 공연관람 및 친목활동**이 이루어지고 권장되고 있음 ⇨ **전문분야 연구회라기보다 법관 교류 모임 유사의 형태로 운영**

- 회장은 **단수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선출되는 다른 연구회와 달리** 정견 발표 및 득표활동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함

☑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자유 경쟁 선거 사례

▶ 2013년 하반기에 있었던 2014년 회장 선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현 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가 선거에서 낙선함

▶ 2015년 회장 선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와 31기 **단독판사**(현 재판연구관) 등이 서로 출마의 변을 한 후 **경쟁 선거**를 치룸

▶ 법원 내 다른 조직에서 찾기 어려운 **구성원의 강한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 ⇨ 연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애착과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

☑ 네이버 밴드의 활성화

▶ 인적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모임답게 다른 연구회와 달리 네이버 밴드를 두고 있고, **회원수도 221명에 달하는 등 활발히 운행되어 실시간 번개모임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여러 특징에 힘입어 2015. 11. 정기총회(1박 2일)에 47명(회원 수 2배 규모인 민사집행법연구회의 원외연수 참가자수와 비슷함)이 참가하는 등 공식 모임도 활성화

● 4 자유로움 속 私조직적 특성 유지

- 연구회 **임원진 및 부장판사들의 찬조금 출연**, 그들 주도의 회식문화 등 선배로서의 역할 요구가 당연시 되는 분위기로서 인적 결합체로서의 분위기 상당함 ⇨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핵심그룹의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5 기타

- 2015년 132명에 달하는 회원이 집중 가입 ⇨ 인권편람 번역본을 회원에게 무료배포한다는 사정이 큰 영향을 미침 (양형실장 분석)

- **연구회 소속 지역별, 법원별 (친목)모임 활성화 ⇨ 다른 연구회에는 없는 현상으로 연구회 소속 법관들 사이의 동질감 등을 드러내면서 결속을 강화하는 선순환 기능**

- **위와 같은 지역별 모임 시스템, 사조직적 특성 및 회장-운영위원-팀장(기획팀장 등)-지역위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진 구성체계 등을 비롯한 운영방식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그대로 移植한 것임**

3. 현행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1 일부 연구분야 주제에 대한 법관 사회의 관심 消盡

- **[의료법연구회]**의 경우 2015년 회원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세미나를 1회 개최한 외에는 게시글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음**

  - 회원의 오프라인 모임도 3년째 전혀 열리지 않고 있음

  - 서울중앙·서부·남부지법을 제외하고는 **전담부 법관들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재판 자료 및 노하우 공유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언론법연구회]**의 경우 2015년 정기총회(세미나)에 법관이 단 8명만 참석하였고, 커뮤니티 기타 대내외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

- **[기업법연구회]**의 경우 **2012, 2013년에는 회원수가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15명의 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현재도 커뮤니티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

  - 단, 그 소모임인 법경제학모임이 정기세미나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이상의 연구회는 2015년 활동평가에서 차례로 최하위(15~13위)를 기록

- **반면 젠더법연구회, 지재법연구회 등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젊은 법관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만한 새로운 전문분야 발굴 긴요함

▣ 2 중복가입 금지 규정 形骸化

- 중복가입금지 규정은 ① 회원수를 고려한 공정한 예산지원, ② 허수의 회원 증대 방지, ③ 법관별로 주된 하나의 전문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성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정책결정한 원칙**임

- 사실상 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 통제가능한 코트넷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시삽이 임의로 가입을 허가하면 중복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복 가입 현황

연구회별 중복가입회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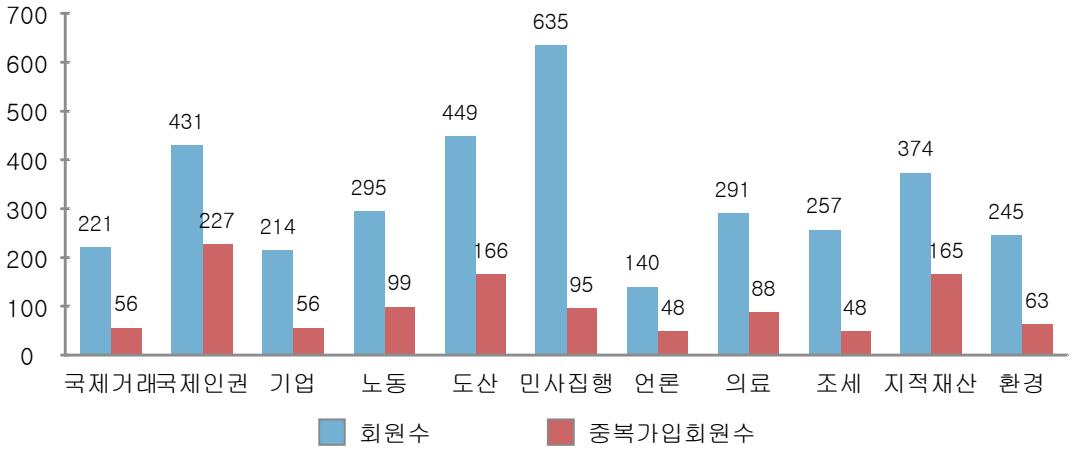

- 중복가입이 허용된 연구회 제외(민사집행법연구회의 경우 사법보좌관 제외)
- 1명의 법관이 여러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먼저 가입한 학회를 제외한 학회에 중복가입된 것으로 계산
-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중복가입 인원수도 가장 많고(227명), 중복가입자 비중도 가장 높음(53%) ⇨ **시습 등 핵심세력에 의한 포섭활동으로 중복가입한 법관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 3 한정된 예산 대비 연구회 다수로 형식적 평가 및 예산배정

● **[현행 예산배정방식]** 연 2회 지원액 배정

- 상반기 배정(예산액 50%)시는 전년도 활동성과를 평가한 순위에 따라 배정
- 하반기 배정시는 활동성과와 무관하게 예산 중 25%는 일률적으로 1/n 배정, 나머지 25%는 회원수에 따라 배정

● **[한계①]** 1억원의 예산을 15개의 연구회에 분산 배분

- 중복허용 연구회를 제외하면 **최대지원액 1천만 원**(민사집행법, **875명**), **최소지원액 450만 원**(기업법, **214명**)으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차등지원의 취지 미약 ⇨ 연구회 활동을 자극할 인센티브로서 기대효과 미흡

● **[한계②]** 제한된 범위의 형식적 평가로 행정처의 관리범위 이탈

- 예산 중 50~55%를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 배정

- 제한된 예산 중 45~50% 범위에서의 성과 평가(1~15위를 3개씩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50만원씩 차등)만으로는 실질적 평가의 동력이 부족함 ⇨ 평가위원인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도 중요 업무가 되기 어려움

● ⇨ 예산 및 전산망 지원에 상응하는 **법원행정처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모색** 필요

▣ 4 커뮤니티의 폐쇄성 등으로 연구성과 사법부 내부 공유 미흡

● **[사법부 전체]** 비회원은 대부분의 게시글을 볼 수 없음 + 일부 법관을 제외하고는 (커뮤니티 외) 지식광장에는 성과를 게시하지 아니함

● **[연구회 회원]** 비적극 회원의 열독률 낮은 편임 + 커뮤니티 메일링 기능을 이용하지 않은 게시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 ⇨ 재판실무에의 활용을 위한 기여도 높지 않고, 사법부 전체의 전문성 향상에도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5 학계, 재야 및 언론 등 상대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법원 신뢰 강화 기능 미미

● 법원행정처가 외부 활동 강조해온 결과 대부분의 연구회에서 외부 학회와의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2014년 미실시 연구회 : 환경법, 도산법, 기업법 (단 기업법은 외부 연사가 절반을 자치하는 심포지엄 개최)

●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음

- ①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나아가 사법부의 전문성을 외부에 각인시키는 효과 미흡함

- ② 권위있는 **외부 학회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법원의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성과는 미미한 수준임

- ③ **사법부 연구회의 출판물(정기, 비정기)이**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물론 출판 예산의 제약 문제도 있음)

▣ ※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관련 문제점

● 1 허가받은 전문분야 이탈·무시

- 2015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정기세미나, 법관전문분야 연수 및 특강 개요

행사	주제	연사
1월 특강	**경제민주화와 인권**	**정○○ 전 총리**
3월 세미나	건강할 권리	김○○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5월 세미나	**증세와 복지**	**새누리당 김○○ 의원**
6월 법관연수	**인권법과 법관**	**경향신문 이○○ 기자 등 (전○○ 대법관, 김○○ 헌법재판관)**
7월 세미나	**모욕죄의 남용과 한계**	연구회 내 '표현의 자유' 소모임 소속 허○○, 류○○ 판사
8월 세미나	영화 빵과 장미	자유 토론
10월 특강	중동 내전과 난민 문제	경향신문 구○○ 기자
12월 학술대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한국노동법학회, 법원 노동법연구회와 공동개최

- **'국제인권' 과 무관한 주제**가 대부분 ⇨ 경제민주화와 인권, 증세와 복지 등은 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의 논의 영역도 이탈하는 수준임

- 정치적 함의를 포함한 주제를 자주 선정하다보니 **연사로도 전·현직 정치인들이나 정치색이 있는 기자 등이 다수 참여**하게 됨

● 2 '인사모'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 등에 조직적 개입 시도

- 연구회 핵심세력이 2015. 7.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을 발족하여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을 인권을 핑계로 관여 시도**

- 상고법원, 사법행정위원회, 판사회의 활성화,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하여 조직적 개입 시도

● 3 **일부 강경·핵심세력**에 의한 연구회 및 사법부 전체 여론 호도

- **[커뮤니티 내]** 우리법연구회의 내부결속 강화 시스템을 모방하여 일부 핵심 세력을 중심으로 유대관계 형성

- **[사법부 내]** 회원 급증 및 젊은 법관들의 이목 집중 등을 통하여 법관 사회, 특히 소장 법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위상과 이미지를 얻고 있음

4. 구조 개편 및 대응방안

☑ 개선방안 요약 ⇨ <전문분야연구회의 전반적 문제점>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 마련

▶[전반적 문제점1] 법관 사회의 관심 소진 ⇨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젊은 법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중견 법관이 주도

▶[문제점2] 중복 가입금지 규정 형해화 ⇨ 중복가입자 일제 정리(규범력 회복)

- 국제인권법이 가장 큰 타격 + 주제 무관 소모임 정리 등 행정처 개입 명분 제공

▶[문제점3] 형식적 평가 및 예산 배정 ⇨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문제점4] 커뮤니티 폐쇄성 ⇨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및 공유

- 핵심세력 위축 및 인권법 회원들만의 이너써클 의식 희석 + 실무전문성 축적

▶[문제점5] 외부 상대 성과 제시 미흡 ⇨ 외부 교류 및 우군 확보 적극 지원

- 외부 교류를 예산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음

▶[인권법 급증요인1] 주제의 보편타당성 ⇨ '국제'인권으로 한정 + 대안적 연구회 신설

- 회장의 역할이 중요 + 인권 관련 수요를 대안적 연구회에서 흡수

▶[인권법 급증요인2, 3] 핵심그룹의 적극적 확장 시도, 자유로운 문화 및 사조직적 특성 ⇨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간 분리,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로 시그널

-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점 부각 + 다수 법관들의 경계심 활용

▶[인권법 급증요인4] 지역별 등 친목모임 활성화 ⇨ 다른 연구회도 도입 및 활성화

- 인권법연구회만의 특징 희석

▶기타 ⇨ 활동 저조 연구회 폐쇄 여부,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여부 등

가. 전문분야연구회 전반에 관한 구조 개편 등 개선방안

▣ 1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

● 필요성

-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운 특정 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이슈를 독점하는 현상 방지

- 시의성 있고 법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법관들의 자기개발 욕구 해소는 물론 선후배 법관들의 바람직한 소통 창구 개설, 합리적 여론 형성의 장 마련

☑ 이슈별 법관여론 주도 온라인공간 분석

▶ ① 사법정책관련 이슈 ⇨ 국제인권법커뮤니티 중 인사모 소모임

▶ ② 법관인사 및 법원문화(부장과의 관계 등) 관련 이슈 ⇨ 다음 익명카페 이사야

▶ ③ 양성평등 관련 이슈 ⇨ 젠더법커뮤니티

▶ ④ 모성보호 및 생활정보 관련 이슈 ⇨ 네이버 여성 법관 카페 유스티티아

⇨ 일부 특정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는 '인사모'와 '이사야'의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전에 법관들의 합리적 여론 분출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커뮤니티 신설 필요

● 발굴의 기본방향

- 젊은 법관들의 관심 및 수요에 부합함과 동시에 **다수 법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분야의 발굴** ⇨ 젊은 법관들의 전문분야 업무능력 및 의욕 고취, 업무 외적 관심의 다변화

- 전문분야의 '주제' 못지 않게 이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상징성 있는 선배법관 필요 ⇨ 젊은 법관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법관들을 각 연구회에 분산 배치, 합리적 여론 형성의 구심점 역할 기대

● [새로운 연구회 후보 1] 사법국제화 연구회

- 각국 및 국제재판소의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추후 연구회 인적 구성 및 활동상황 검토하여 '각국의 사법행정'도 연구대상으로 확대

- 각종 사법현안에 대한 해외자료 수집, 번역 및 조사, 국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번역, 해외 소개 및 홍보 ⇨ 현행 국제규범연구반을 확대개편하는 형태

- [참가 유인] 현재 국제규범연구반의 경우 **장기해외연수를 준비하거나 외국어 실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젊은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사법국제화연구회의 경우에도 설립 초기부터 행정처가 적극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젊은 법관 상당수의 관심을 끌 수 있음

- [+] ① 외국어 및 해외사법에 관심 많은 **젊은 법관들 상당수** 참여 가능, ② **국제인권법 회원 중 '국제' 관련 분야에** 관심 있어 가입하였던 법관을 유인할 수 있음, ③ **포괄적인 이슈**를 연구 주제로 망라 가능, ④ (인적 구성과 성향이 행정처에 우호적인 경우) 각종 사법행정현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 수집 및 방어논리 개발, 지지여론 확산의 출발점 역할 기대 가능

- [-] ① 국제규범연구반 및 외국사법제도연구반과의 통폐합 내지 차별화 문제, ② 사법행정 현안이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연구 자율성 관련 오해의 소지(‘관제 연구회’ 등)가 있음, ③ 인권법 핵심세력 등 외부 세력이 적극 참여·관여할 가능성 있음

- 운영진 후보군

이름	사진	소속	경력
이○○		○○고등법원 고법판사	-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과의 소통, 교류능력 있음
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해외사법관련 전문성 有,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과 소통, 교류 가능함

● **[새로운 연구회 후보 2] 가칭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 **[주된 분야] ‘영화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속 사법부 및 법관의 모습’**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및 파생되는 법적 문제, 나아가 미디어가 법관 및 재판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관련 컨텐츠의 개발방안을 각 연구

- [+] 젊은 법관들의 **관심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음(엔터테인먼트법 분야는 젊은 법관들이 관심을 갖는 전문분야 중 연구회 미개설된 몇 안 되는 분야 + 예산 지원을 통한 공연 관람, 예술인과의 간담회 등도 높은 호응 예상)

- [+] **미디어 속 왜곡된 법관과 사법의 모습을 바로잡는다는 필요성과 명분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법정드라마 대본 집필 등에 관심 있는 법관들의 수가 상당**함 ⇨ **자발적으로 적극적 활동 유도** 가능

- [+] **주요 영화사·방송사·연예기획사 방문행사 등을 통해 법관 사회 화제의 중심**에 서는 등으로 **단기간에 현행 연구회 판도에 가시적 변화** 유도 가능

- [+] **장기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법원에 대한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와 인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ex: 영화 ‘12 angry men’) 위와 같은 모임 필요함

- [-] 명분을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풍 81', '3S 정책' 등과 같은 愚民化 정책으로 비판받으면서 행정처가 설립의 배후로 의심받을 위험 있음

- [-] 컨텐츠의 지속적·전문적 창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흥미 위주의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우려 있음

- **※ 전문분야 연구회로 설립하는 것이 부담될 경우 코트넷 커뮤니티로 개설**할 수 있음(국제규범연구회,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커뮤니티 등이 그러함)

- 운영진 후보군

이름	사진	소속	경력
문○○		○○지법 부장판사	-젊은 법관들 사이에 인기 및 신뢰도 높음 **-2011년 친한 후배법관들을 데리고 SM을 방문**하고 법정드라마 시나리오 고민하는 등 관련 분야 관심 ⇧ - 어느 정도는 행정처와의 합리적 가교 역할 가능
전○○		○○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처와의 의견조율 가능하고, 젊은 법관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가 받음
오○○		○○고등법원 고법판사	-행정처 배후 지원 등의 오해 소지 없이 커뮤니티 운영가능

▣ 2 중복가입자 정리

● 필요성

- ① 편법에 의한 연구회 중복가입이 난무하는 실정 ⇨ **원칙을 준수해 1개의 연구회에만 가입한 법관**이 **예산지원, 전문자료 접근, 전문성 있는 법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 ② 편법적 중복가입의 혜택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가장 크게 누리고 있음 ⇨ **연구회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작업(중복가입자 정리)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장점

▶ 1 [법관들 상대로 명분 있음]

- 법관들의 학술조직인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 및 구성에 대하여 행정처가 관여할 경우 법관들의 자율성 침해, 학문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 방안의 경우 ① **중복가입금지규정의 규범력 회복, ②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③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법관들의 피해 방지** 등의 명분 있음 ⇨ 규범 준수 및 편법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을 중시하는 법관들의 성향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 2 [행정처·차장이 아닌 전산정보국장 선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임]

- 수백명 가입법관의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방안(활동계획 사전 승인, 사후 평가 강화, 특정 연구회에 대한 제재 등)의 경우 그 성격상 행정처장 또는 차장의 공지** 내지 사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음

- 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연구회 성과 평가 위원회(위원장 기조실장)'의 '심의 강화'를 개선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도 유사한 논란의 소지 있음

- 중복가입금지 해소방안의 경우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공지 및 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나 저항 없음** ⇨ 그 시행방안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른 방안에 비하여 낮음**

▶ 3 ['인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임]

- '인사모'는 조속히 해소 내지 와해시킬 필요성이 큼

- 그러나, 행정처가 '모든 연구회는 **전문분야와 무관한 소모임 활동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정공법을 택할 경우 인사모를 표적으로 한 조치임이 쉽게 드러나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 있음

- 중복회원 해소방안은 다소 기술적인 커뮤니티 정비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전정국장이 현행 규정에 위배되는 중복회원 해소방안을 공지하면서 그 밖의 커뮤니티 관련 규정 역시 소개하고 이에 위반하는 활동을 자제하여 달라고 안내**한다면 **법관 사회 반발이나 인사모측의 반발 명분을 최소화**할 수 있음

▶ 4 **별다른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유예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공지와 동시에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여부 정도만 결정하면 됨

● 시행에 따른 국제인권법연구회 위축 효과

- 한명의 법관이 가입한 여러 연구회 중 **가입일자가 가장 빠른 연구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복가입으로 탈퇴처리**할 경우 연구회 회원 수 변동 내역

	현재 가입회원 수		중복가입 탈퇴처리 후 회원 수
국제거래법	221		165
국제인권법	**431**		**204**
기업법	214		158
노동법	**295**		**196**
도산법	**449**	⇨	**283**
민사집행법	**875**		**780**
언론법	140		92
의료법	291		203
조세법	257		209
지적재산권법	**374**		**209**
환경법	245		182

※ 청색표시는 가입회원이 90명 이상 감소하는 연구회

● **부작용 검토**

- 중복가입 연구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관들이 다른 연구회에서 탈퇴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선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중복가입자 정리가 오히려 소장 법관들의 인권법으로의 **편중 현상 촉발**할 가능성

- 중복가입 정리 외에 아래에서 검토할 '부장급 이상 대거 탈퇴 방안'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의 연구범위 명확화 및 인사모 해소 시도 방안' 등과 **함께 시행될 경우**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줄 것이므로, 다수의 법관들이 인권법을 선택할 가능성 희박함

▣ 3 예산 증액 및 실질적 평가 시스템 구축

● **[필요성]**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예산이 장기간 1억원으로 동결** ⇨ 15개에 달하는 연구회에 대하여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어려움

- 실질적으로도 외부 학술기관과의 공동세미나 등과 같은 **외부활동은 현재의 예산 지원 수준으로는 시행하기 곤란**하므로, **외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016. 6. 9. ~ 11. 사법연수원 소강당(250석 규모)에서 '국제 난민컨퍼런스' 개최

▶ 사법연수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 개최

- 사법연수원의 국제교류 예산 및 국제실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규모 국제행사

▶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인 ○○○○ 전 호주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30여명의 외국 전문가 참석 예정

▶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회원 급증 가능성

- 대규모 국제행사(언론 주목 가능성도 큼)를 통해 소장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의 장점과 위상을 각인시킬 가능성 매우 높음

- 참석 법관들에게 사법연수원 숙소 제공(법관연수동 숙소가 금요일에 비는 것 활용)하는 것 역시 일종의 특혜이자 법관들에게 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우려 있음

- 한정된 예산을 인권법연구회가 독점하게 됨 ⇨ '난민'은 '국제인권'의 전형적인 안건이므로 연구회의 연구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지원 제한하기도 어려움

- 예산 증액으로 법원행정처의 예산분배 재량범위가 커질수록 연구실적에 따른 실질적 차등지원이 가능해짐 ⇨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기계적·형식적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여건 조성

● 예산증액을 위한 **예산당국 설득 방안**

- 예산이 동결된 기간 동안의 연구회 수 및 가입회원 수 급증, 누적된 연구성과 등을 내세워 예산당국 설득

- 법무부의 전문분야 연구 지원 관련 예산 등 타부처 예산 상황도 확인하여 증액의 논거로 삼을 필요 있음

● 사안에 따라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비(약 6억 원)를 활용할 필요 있음

- 기존의 **헌법연구회**가 법관 사회의 인권 관련 연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개최하는 경우 예산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 있음

● 실질적 평가 기준 강화

- 현행 평가기준표(아래 '외부 활동 강화' 항목 참조)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필요 있음

▣ 4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 필요성

- 커뮤니티 게시글이 대부분 회원 전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사법부 전체 차원의 전문역량 축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학술연구단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등의 경우 일부 회원의 사조직적 운영행태와 게시글 비공개가 맞물려 회원들에게 '자신들만의 동질감' 내지 '일반 법관들은 알지 못하는 이너써클에서 활동한다는 은밀한 만족감' 등을 유발하고 있음

● 시행방안

- 커뮤니티 총괄관리자인 전정국장이 언제든지 공지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음

- ① '법관들이 자신이 가입한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의 연구성과에도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거나

- ② ' 사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이상 그 연구성과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는 정도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음

- ③ 각급 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반드시 지식광장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압박' 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희석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이 부분은 전정국장이 아니라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이 담당)

● [기대효과]

- ① 학술성과 공유로 사법부 전문역량 강화,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코트넷 지식공유 활동 활성화

- ② 다른 커뮤니티에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중복가입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따른 불만 내지 부작용 완화

- ③ 인권법커뮤니티 및 노동법커뮤니티 등 인적 유대관계 강화의 수단으로 커뮤니티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연구회의 경우 게시글 내용 공개를 통해

자신들이 '은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내지 결속감'을 약화시켜 활동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음

- ④ 특히 인사모의 경우 내부논의가 사법부 전체에 전면 공개됨으로써 인사모 내부의 논의가 코트넷 자유게시판 또는 제도개선법관토론방에서의 논의와 차별화되지 않게 됨 ⇨ '인사모의 자유게시판化'를 통해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는 위축될 가능성 있음

- ⑤ 커뮤니티 내부 논의 내용 공개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용이해짐 (심의관 등이 의심을 감수하며 해당 커뮤니티에 가입할 필요 없음)

● 부작용 검토

- 게시글 공개시 인사모 등의 편향적 논의는 또 다른 폐쇄공간을 찾아 네이버 밴드 또는 다음 카페 등으로 도피할 가능성 큼

- 2015. 5. 우리법연구회의 상고법원 관련 세미나 사례에서 보듯 법원의 공식 연구회 내지 코트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① 훨씬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고, ② 공개되어 문제되는 경우에도 '특정 성향 일부 법관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방어 논리 활용 가능함

● 폐쇄 커뮤니티와의 관계

- 폐쇄 커뮤니티 근거 규정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음

- **인사모의 경우** 폐쇄 커뮤니티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커뮤니티 내부에서 비판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연구회장이 '인권을 위한 사법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일반회원의 접근을 막는 폐쇄적 밀실 논의의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다른 일반 회원들의 지지를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5 연구회 외부 활동 강화

● 필요성

- 15년간 축적된 연구성과 및 역량을 대외 관계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반면 **일부 연구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새로운 주제발굴 및 연구활동이 침체된 상황에서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자극을 받을 필요도 있음

- **사법부 위상 강화 및 영향력 확대, 사법부 우군 확보와도 연결되는 과제**임

● [시행방안 ①] '대형 이벤트' 발굴 및 지원

☑ 필요성

▶ 현재와 같이 고만고만한 수준의 연구활동 및 외부 공동세미나 정도로는 **전문 역량 과시를 통한 사법부 위상 강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어려움**

▶ 해당 전문분야에서 **법원 전문분야연구회의 역량이 확실히 부각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나 대형 출판사업**을 기획·실시할 필요 있음

☑ 시행방안

▶ **대형 이벤트**

- 특별세미나 외에도 **모의재판, 국제회의(ex: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국제난민컨퍼런스), 경연대회 등** 형식의 제약 없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필요 있음

▶ **대형 출판사업**

- **해당 분야에서 바이블로 남을 수 있는 최고수준의 서적**, 실무와 학계의 논의를 집대성한 서적, **최첨단 분야에 대한 선도적 문헌**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특별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연구회 예산(1억 원)이 아닌 각급 법원 전문분야 지원예산 기타 다른 항목에서의 **충실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행정처장이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별 사업별로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2012년 기조실 검토서의 '상시지원' 방안 유사 제도 도입, 단 수많은 신청이 제출될 것에 대비하여 요건, 시기 및 가용예산범위 등에 관하여 **별도 상세 검토 필요**)

▶ **대법원 국제 법률 심포지엄** 활용 방안

- 매년 국제 심포지엄 예산(약 1억 7천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전년도 또는 **최근 활동이 가장 우수한 연구회 또는 가장 탁월한 심포지엄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게 해당 연도의 국제 심포지엄 준비를 맡기는 방안**도 가능(행정처가 행사 실무지원을 하고, 대법원 주최 심포지엄으로서의 골격은 유지함)

● [시행방안 ②] 매년 정기 평가시 외부 활동 관련 항목 대폭 강화

- 현재 평가기준상 외부 활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점이 없음
- 커뮤니티의 내부 게시글 및 참여도에 대한 기본 배점이 65점에 달함
- 외부 단체와의 공동세미나 등의 외부행사를 공식 평가항목의 가점사항으로 명시하는 등의 개선 필요

현행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기준		배점(100)
게시물 평가	토론장 및 자료실에 게시된 글과 논문 등에 대한 평가		30
	세부기준	게시물 주제의 연구 필요성	7
		게시물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7
		게시물의 완성도	8
		실무와의 관련성, 실무에 대한 기여도	8
회원 참여도	게시물 및 게시자의 수, 조회수 등을 고려한 참여도 평가		30
	세부기준	게시물의 수 (절대 숫자)	10
		글을 게시한 회원 수 / 전체 회원 수	10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	10
세미나	세미나 개최여부 및 그 내용, 성과 등에 대한 평가		20
	세부기준	오프라인 세미나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	8
		세미나 구성의 적절성	5
		세미나 성과물의 수준	7
기타 (사이트운영,예산등)	자료집 등 연구성과물 산출 여부,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연구회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등 기타사항 평가		20
	세부기준	코트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메뉴 구성,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의 적절성	5
		자료집 등 연구성과물의 발행 여부 및 수준	5
		내년 연구회 운영계획의 적정성	5
		전년 예산 집행의 적정성	5

● **[시행방안 ③] 사법부 우호 인사 확보를 위한 방안**

- 매년 각 연구회별로 **연구회와 관계가 돈독하거나 연구회 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학자 내지 저명인사**를 1명씩 추천받아 **법원행정처장 주최 만찬에 초청하고 공로패를 수여**하는 방안 등(원로급 석학들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만찬도 고려 가능)

-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사법부와 유대관계 강화** 효과

● 단, 외부 영향력 확대 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 추가 분석·검토 필요

나. 특정 연구회 과잉 확장 관련 대응방안

▣ 1 연구회 논의 주제를 허가받은 전문분야의 범위로 제한

● **필요성**

- 전문분야를 국제인권법으로 특정하여 허가받았음에도 국제적 이슈와 무관한 일반 인권론, 나아가 인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관한 활동에 집중하는 실태를 타파할 필요

- 심지어 인사모와 같이 전문분야 연구와 무관한 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음

● 유의사항

- 이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학문의 자유 억압', '사법행정에 동조하지 않는 판사들 압박' 등과 같은 자극적인 프레임에 의한 반격 예상됨

- 최대한 유화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큼

● [해결방안 ①] 연구회 회장의 리더십 발휘

- 특히 인사모에 대하여는 전문분야 연구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문제제기 충분히 가능함

☑ 반드시 현행 회장 체제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차기 회장은 특정 성향의 핵심세력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 높음

- 최근 인권법연구회와 노동법연구회의 급성장 및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의장직 장악 시도 성공 등으로 인한 자신감,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 등의 공개 행보 강화 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노동법연구회도 2015년에만 95명의 회원 급증(국제인권법과 준회원이 다수인 민사집행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증가) ⇨ 공식적으로는 '전담재판부 법관의 가입을 독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핵심세력의 적극적 확장 노력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

- 대법관 임명제청시 '법원 인권법연구회장 명의 반대 성명 또는 재고 요청' 등은 언론 입장에서 휘발성과 폭발력이 매우 강한 소재가 됨 (2017년 이○○ 대법관님 후임 임명시에는 진보적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명분도 있을 것임)

▶ 현 회장은 사법행정라인에 있으면서도 연구회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음

▶ 현 회장 체제하에서 인사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차기 회장 체제하에서는 내부적 논의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행정처의 전면 개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고려해야 하는 극히 부담되는 상황 발생 우려

∴ 그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 있음

- 부드러운 리더십 스타일의 현 회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개설의 초심을 강조하면서 정서적으로 설득·호소할 경우 다수의 법관이 수긍·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임

● [해결방안 ②] 대안적 연구회 신설 또는 대안적 활동 지원

- ‘국제인권’ 이슈가 아닌 일반 인권적 이슈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회도 얼마든지 학술연구 활동 가능

- 현재 국제인권법 소속 **법관들** 상당수는 ‘국제인권’ 이 아닌 **보편적 인권 이슈의 관심으로 가입함** ⇨ 보편적 인권 이슈에 대한 다른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은 국제인권법으로의 독점적 유입을 방지하고, 인권 관련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음

- 대안적 연구회 신설은 다소 어려움 예상됨 ⇨ 추가 검토 필요

- 기존 연구회 중 헌법연구회(또는 형사법, 젠더법)를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에 관하여 법관 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활동 발굴하여 지원 필요 ⇨ 특별 예산 지원 가능한 대형 이벤트 발굴할 필요 있음

☑ 젠더법연구회에 대한 시각 전환 필요성

▶ 그간 젠더법연구회의 확장 및 발언력 강화에 대하여 조심스러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어 왔고, 젠더법연구회에 일부 强性의 법관이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근본적으로 젠더법연구회의 위상 강화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여성 법관들의 지위 강화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불가역적인 시대의 흐름**일 뿐만 아니라,

▶ 무엇보다, 인권법연구회의 핵심그룹 등과 같이 **사법행정라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근본적인 불신과 반감을 전제로 하는 단체의 활성화가 훨씬 더 위험하고,** 젠더법연구회는 여성인권 문제와 가부장적인 잔재가 남아 있는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뿐 사법행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

▶ 물론 젠더법연구회의 경우 **행정처와 의견조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권 분야의 대안적 연구회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젠더법연구회를 주요 후보로 고려**함이 타당하고, 그 활동지원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음

▣ ② 핵심세력과 다수 법관간 분리 방안

● 필요성

- 핵심그룹의 활발한 활동과 그들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인하여 **소수의 핵심그룹이 연구회 전체의 입장**, 나아가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에 대한 문제제기’ 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 ⇨ 개선 필요

● 시행방안

- **인위적인 개입은 성공확률도 낮고,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간접적 여건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 ⇨ **무리하지 않은 수준의 문제제기 내지 논란을 통해 다수 회원의 경각심 내지 우려 일으킴**

- ① 인사모가 연구회의 설립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회장의 문제제기

- ② 회원 가운데 법원의 '주류 중 주류' 로 인식될 수 있는 경력의 선배법관들 다수임 ⇨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도록 유도

☑ **선배 법관들의 탈퇴를 통하여 인권법연구회가 논란의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젊은 법관들 입장에서 탁월한 실력과 경력을 갖춘 **선배법관이 다수 있어 인권법연구회의 높은 위상과 소속감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음 ⇨ 고법부장 중에서만 성○○, 이○○, 김○○, 유○○, 이○○, 이○○ 부장 등

▶ 명분 없이 일거에 탈퇴할 경우 행정처가 배후에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적절한 명분을 갖추어 탈퇴하되, 대거 탈퇴할 필요**가 있음 ⇨ 인사모에 대한 회장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사모측이 존치주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명분이 될 것임

▶ 종전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연구회 활동에 관하여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만으로도 상당수 법관이 자연스럽게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

- ③ 인권법연구회가 그 **시스템 및 인적 구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사정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각될 경우 회원들의 상당한 동요 있을 것임 ⇨ 구체적 방법론은 추가 검토 필요

▣ 3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장점을 다른 연구회에 도입

● **지역별 친목 소모임, 팀장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번개 모임 활성화** 등은 우리법연구회의 시스템을 상당수 모방한 것으로서 **회원간 유대강화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음

● ⇨ 도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다른 연구회와 커뮤니티에서도 적극 도입·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권법연구회만의 장점 희석 + 다른 연구회 활성화

▣ 4 관심 및 활동 저조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

● 관련 규정 ⇨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 설립허가 취소 가능,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정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

>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
> 제2조(연구회의 설립허가)
>
> 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
>
> **☑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
>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
> ③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
> ④ 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
>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시행 타당성 검토 ⇨ 명분 약하고,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

- ① **설립목적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 ⇨ 법관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예산 제한 등을 통한 간접적 압박 검토)

- ②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커뮤니티 ⇨ **직권 폐쇄 가능**하나, 사전 의견진술 과정에서 **향후 적극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힐 경우 신중**할 필요

- ③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 **코트넷 운영위원회에서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할 필요 (**행정처의 불통·권위적·관료적 이미지 악화,**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

▣ 5 활동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방안 검토

● 연구회 및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활동계획을 보고하게 한 뒤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 회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검토 의견 ⇨ 소극**

- **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 승인 또는 수정요구 등**은 그 자체로 조심스럽고,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및 탄압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법원행정처가 그로 인한 논란을 정면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크고, **수정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 가능성도 농후함**

- 행정처(결국 대법원장님, 처장님) vs 인권법연구회 또는 진보 법관세력의 **대결구도가 설정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참고] 검토의견을 종합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및 로드맵 예시

● **인사모에 대하여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하지만, 연구회의 시스템 전반 대응방안을 제외한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함

● **[선결문제] 시기적·정무적 검토 ⇨ 사법행정위원회 진행 중 연구회 관련 조치 착수 여부**

- 현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4. 11. 안건 제출기간 4. 20. 선정안건 발표 4. 25. 위원들 검토기간이 5. 6.까지로 각 예정되어 있음 ⇨ 위원회 정식 회기는 5. 9.부터 13일까지 1주간

-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강화'로 민주적 정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축제기간에 연구회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사**

법행정위원회의 출범의의를 반감시킬 우려도 있음

- 1새로운 연구회 발굴 및 개설에도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사법행정**위원회 종료 후 실시** 방안 vs. 2인사모의 활동이 점점 강화되고 사법행정위원회 활동과정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종료 전 조기 실시** 방안

- 이하에서는 우선 **조기 실시 방안을 전제로 로드맵을 예시**하기로 함

시기	방안 예시
4월 초	**전정국장 명의 공지** '① 커뮤니티 활동 중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있는 활동에 대하여 특별예산 지원 방안 도입 (본래 기조실장 명의 공지사항이나 한 번에 공지함이 효율적일 수 있음) ② 중복가입 커뮤니티 정리 예정 (일반법관들 피해 명분) ③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로 전환 (사법부 전체 역량 강화 등)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하면서 연구회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 해소 당부'
4월 중순	**국제인권법 회장의 문제제기** '인사모의 경우 연구회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데, 이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함'
4월 하순	1**새로운 대안적 연구회**(ex. 엔터테인먼트법 연구회 및 사법국제화연구회) **발굴·신설** ⇨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이벤트 등 공지 및 활동 개시 2다른 기존 연구회 활동 활성화 (밴드 및 지역별 모임 등)
5월 초순	인사모 소모임이 **존치 입장을 고수**할 경우⇨ **고법부장 등 명망 있는 선배 법관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거 탈퇴**
5월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다수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인사모의 자연스러운 소멸 유도